



## 기 획 재 정 부

수신 오이코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귀하 (우07345 서울 영등포구 63로 32, 1208호)  
(경유)

제목 외국환업무등록 통지(오이코스자산운용 주식회사)

1. 오이코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우리 부에 제출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을 검토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 후 외국환거래법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제한·정지될 수 있으며, 명칭, 본점의 소재지 또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귀 사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한 후 납세필증 사본 1부를 1주일 이내에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 외국환업무등록증 1부. 끝.

기획재정부장관



주무관 **박명호** 외환제도과장 전결 2025. 7. 31.  
도종록

협조자

시행 외환제도과-782 (2025.07.31) 접수

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, 중앙동 기획재정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oef.go.kr>

전화번호 044-215-4758 팩스번호 044-215-8136 / [pmh0847@korea.kr](mailto:pmh0847@korea.kr) / 비공개(7)

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

제 2025-29호

## 외국환업무 등록증

회사명 오이코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, 1208호

위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)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함.

2025년 7월 29일

기획재정부 장관

